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7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8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17일, 김희걸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희걸)

○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가. 개요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<조항별 신·구 대비표>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
제3조 제1항 중	취하여야	밟아야
제3조 제2항 중	취하여야	밟아야
제9조 중	4회(분기별 1회)	네 차례(분기별 한 차례)
제10조 제3항 중	명을	요구를
제15조 제1항 중	1회	한 차례
제15조 제4항 중	다음연도	다음 해
제16조 중	1회	한 차례
제17조 제1항 중	비치하고	보관하고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은,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입법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것임.
- 다만,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비하려는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현행의 용어를 유지하더라도, 그 해석상 어려움이 크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행 조례의 입법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있음.
 - 예를들어, 개정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‘다음 각 호의 조치를 “취하여야” 한다’ 를 ‘다음 각 호의 조치를 “밟아야” 한다’ 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인바, 이 경우 오히려 현행의 용어가 보다 문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친숙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.

〈안 제3조 신·구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 1.~2. (생략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	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발아야</u> ----. 1.~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발아야</u> --.

- 물론, 개정안 제17조 제1항과 같이, “비치하다”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 “갖춰두다” 또는 “갖춰놓다”와 같은 순화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¹⁾,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용어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, 개정안과 같이 특정 용어만을 전환 할 경우 오히려 문맥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(예시. 안 제15조 제1항: ...<생략>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. ⇒ ...<생략> 교육을 연 한차례 실시하여야 한다)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1) 법제처(2011)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제4판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취하여야”를 “뱉아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중 “취하여야”를 “뱉아야”로 한다.

제9조중 “4회(분기별 1회)”을 “네 차례(분기별 한 차례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명을”를 “요구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해”로 한다.

제16조중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중 “비치하고”를 “보관하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</p> <p>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</p> <p>제9조(회의)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4회(분기별 1회)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.</p> <p>제10조(간사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간사는 위원장의 <u>명을</u>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</p> <p>제15조(예방교육)</p> <p>①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·지원할 수 있으며, 교육관</p>	<p>제3조(책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밟아야</u> ----- 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밟아야</u> -----.</p> <p>제9조(회의) ----- <u>네 차례(분기별 한 차례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간사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요구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5조(예방교육)</p> <p>① ----- ----- <u>한 차례</u> ----- ---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/p>

련 실적은 다음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.

제16조(여성정책 모니터링)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1회 실시하며, 그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

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비치하
고, 경찰·소방서·의료기관·학교·주민센터·복지관·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.

다음 해

제16조(여성정책 모니터링) ----

한 차례

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

① ----
보관하
고 ----